



가정통신문

담당부서명

위클래스

전주동중-2023-14

학업중단숙려제 안내문

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(최소 1주 이상 ~ 7주까지) 상담, 진로체험,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(숙려)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※ 관계법령: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

① 실시 대상 : 학업을 중단 의사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

② 운영 기간 : 최소 1주 이상 ~ 최대 7주 이하

③ 숙려제 프로그램

-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·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

④ 출석 인정 기준

-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주 2일 이상 참여할 경우 주 단위로 출석 인정
- 일부 또는 전체 프로그램에 불참할 경우 주단위로 미인정결석 처리

구분	출결관리
상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주 2회 이상 참여한 경우 해당 주 '출석인정결석' 처리 ◦ 주 0회~1회 참여한 경우 해당 주 '미인정결석' 처리
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주 2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한 경우 해당 주 '출석인정결석' 처리 ◦ 상담으로 대신 한 경우 상담 1회를 프로그램 1회로 처리

⑤ 문의

- 각 학급 담임교사
- 학업중단 예방 업무 담당교사 ((☎063-715-1393))

2023 년 3 월 9 일

전 주 동 중 학 교 장